

---

# 입 법 정 보

2017-11호

---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 회 사 무 처  
(수석전문위원실)



# 목 차



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청)	5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	5
3.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5
4.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6
5.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7
6.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7
7.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8
8.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8
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8
1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9
11.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10
12.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안전처)	10
13.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
14.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
1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정(안) (국토교통부)	12
1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 (국토교통부)	13
1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4
18.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안전처)	15
19.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안전처)	16
20.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7
2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7
22.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자치부)	18
2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9
2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20
25.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1

26.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21
27.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정(안) (국토교통부) .....	22
2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	22
2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	23
30.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23
31.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문화체육부) .....	23
3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24
33.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25
34.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26
35.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26
3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27
37.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28
38.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	30
3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31
40.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32
4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 .....	32
42.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34
43.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34
4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35
45.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36
4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36
4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37
48.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38
49.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38
50.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38
5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39
5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	41
53.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42
54.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	42
55.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및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 .....	43
5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부) .....	43
5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44
58.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44
59.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	45
60.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	45
6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	46
6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	47
63. 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47
64.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	48
65.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	48
66.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48
6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48

## 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청)

- 예고일자 : 2017. 5. 15.                      • 마감일자 : 2017. 5. 22.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16.12.2일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으로정하도록 위임한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 및 확인의 취소와 관련된 업무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위탁하려는 것임
- 가. 명문장수기업 특례 대상 중견기업 범위 기준 마련(안 제9조의2)
  - 특례 대상 중견기업 범위는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규정
- 나. 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 및 확인의 취소에 관한 업무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위탁(안 제15조제2항제1호)

##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7. 5. 15.                      • 마감일자 : 2017. 6. 26.
- 첨단기술업종 등 전통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산업용지로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업들의 산업용지 매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시설용지의 최소 분할면적기준 완화 추진
- 가. 관리권자·관리기관 또는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산업용지의 최소 분할면적기준 완화 (안 제39조의3제1항 개정)  
산업용지 분할시 최소규모인 현행 900㎡를 삭제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으며 산업단지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900㎡보다 더 작은 규모로 산업용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함

## 3.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5. 15.                      • 마감일자 : 2017. 6. 26.

- 해안경관을 활용한 관광·휴양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개발구역인 해양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하는 내용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568호, 2017.2.8 공포, 2017.8.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기준 마련(안 제27조의2)
  - 1)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실현가능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적 요소를 고려하도록 함
  - 2)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최소 면적규모 및 최소 투자규모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
- 나. 해양관광진흥지구 내 설치 시설 제한 완화(안 제27조의3)
  - 1) 해양관광진흥지구에 포함된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이와 중첩된 보전산지에는 해당 법률에서 허용하는 시설물 외에도 별표2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 2) 해양관광진흥지구에 포함된 수산자원보호구역, 공원구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공원구역과 중첩된 보전산지에는 해당 법률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다. 해양관광진흥지구 내 건폐율·용적률 완화(안 제27조의4)
 

해양관광진흥지구에 포함된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공원구역에서는 별표 3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함

#### **4.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5. 15.                      • 마감일자 : 2017. 6. 26.
- 가. 구조안전 확인 대상 확대
 

지진구역 I 안의 건축물만 구조 안전을 확인하도록 하였으나 지역에 상관없이 중요도가 높은 경우 구조 안전을 확인하도록 함

## 5.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5. 15                      • 마감일자 : 2017. 6. 26
- 내진설계 면적기준을 강화하고 주택과 중요용도 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그 대상을 구체화하고자 함
- 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 구체화(안 제10조의3제1항)  
현행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 중 구조 및 지반안전에 영향이 적은 저층 건축물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기준을 완화하도록 함
- 나. 감리자 지정 제외대상 명시(안 제19조의2제1항)  
감리자를 지정하는 소규모건축물의 대상 중 경미한 건설공사나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은 제외 하도록 함
- 다.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안 제32조제2항)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기존 500㎡ 이상의 건축물에서 200㎡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하고 주거용 건축물을 포함함

## 6. 행정자치부의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 예고일자 : 2017. 5. 16.                      • 마감일자 : 2017. 5. 22.
-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소속기관으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 의결하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7.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 8명(고위나 1명, 4 5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성과평가 대상 한시조직으로 2019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심사지원과를 신설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과학수사 감정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25명(4 5급 2명, 5급 8명, 연구관 3명, 연구사 10명, 6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호, 2017. 5.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의 정원표에 반영하려

는 것임

## 7.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7. 5. 16.                      • 마감일자 : 2017. 7. 13.
- 수입하려는 검사대상기기의 제조검사 실시에 따라 제도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8.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7. 5. 16.                      • 마감일자 : 2017. 6. 26.
- 수입 검사대상기기 제조검사 도입을 골자로 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에 따라 업무추가 및 위탁 권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 수입하려는 검사대상기기에 대해서도 제조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는 수입을 금지(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의2)

## 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5. 16.                      • 마감일자 : 2017. 6. 25.
- 무대에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을 강당, 공연장, 집회장 등으로 구체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시행 시 혼란을 방지하고, 기존 건축물의 무대 경사로 설치에 대한 경과규정을 둠으로써 개정규정의 실효성 확보 및 장애인의 불편 해소 도모
- 가. 무대 경사로 설치대상 구체화(안 별표 2 제3호가목(14))  
무대 경사로 설치대상을 공공청사 등의 강당, 공연장 및 집회장 등으로 구체화
- 나. 무대 경사로 설치 경과조치 마련(안 부칙 제4조 신설)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은 개정안 시행 후 2년이내에 무대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함

## 1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5. 16.      • 마감일자 : 2017. 6. 26.

○ 공동주택단지 간에 폭 8m 이상 도로 등이 있는 경우라도 육교 등이 설치되어 단지 간 통행의 안전성 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입주민 동의를 거쳐 공동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전임 관리사무소장의 배치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이 주택관리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첨부하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으로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하므로 지자체의 주민등록표등본 조회 등을 생략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를 위한 서면동의 방법 개선(안 제2조제1항)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를 위해 입주자 등의 서면동의를 받기 전에 입주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사항에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로 인해 달라지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운영방안,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운영방안 등 주요 사항을 포함하게 함으로써 입주자들이 서면동의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함.

나. 공동주택 공동관리제 개선(안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공동주택단지 간에 폭 8m 이상 도로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관리를 불허하고 있으나, 육교 등이 설치되어 단지 간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을 크게 해치지 아니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단지별로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공동관리를 허용하도록 함.

다. 개인의 주택관리업 등록 신청 방법 간소화(안 제28조제2항·제3항 및 별지 제29호서식)

개인(내국인, 재외국민, 외국인)이 주택관리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는 첨부하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으로 신청자에 대한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하므로 시·군·구 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한 주민등록표등본, 여권정보,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조회 등을 생략하도록 함. 라.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배치신고 방법 간소화(안 제30조제2항·제3항, 제33조제3항 및 별지 제33호서식)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전임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종료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전임 관리사무소장의 배치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11.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 예고일자 : 2017. 5. 16.                      • 마감일자 : 2017. 6. 26.
- 국민안전처장관이 전문기관에 위탁한 업무를 부당하게 운영 할 경우 위탁업무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전문기관에 위탁한 업무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는 세부근거 마련(안 제13조 신설)
  - 1) 전문교육 및 자격인증 시험의 관리 부실, 교육비 및 자격인증시험 응시수수료 관리를 부실하게 할 경우 시정명령
  -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자격인증 시험을 부당하게 운영한 경우 위탁업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 3) 위탁업무가 취소된 기관 또는 단체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동일한 위탁업무를 받을 수 없도록 함
- 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에 영문 인증서 추가 등(별지 제2호서식)

## **12.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안전처)**

- 예고일자 : 2017. 5. 16.                      • 마감일자 : 2017. 6. 26.
-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업무 휴·폐업 및 재개 등에 대한 신고제 합리화를 통한 신고처리 절차의 신속성 확보와 별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전문교육과정 및 인증시험 위탁기관 임직원 등에 추가 적용하여 공공업무 수행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재해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업을 휴·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신고수리 필요여부 구분(안 제16조)
- 나. 민간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별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규정에 전문교육과정과 인증시험 위탁기관 임직원 등 추가(안 제35조의2)
- 다. 위탁받은 업무를 부정하게 운영한 경우 벌금부과 및 위탁업무 취소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36조)

### **13.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5. 17.                      • 마감일자 : 2017. 6. 26.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2017. . 공포, . . 시행)되어 위해성 평가 실시 대상 확인 신청절차가 위임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위해성평가 검증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상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과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위해성평가 대상 오염물질에 석유계총탄화수소를 추가하려는 것임

### **14.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5. 17.                      • 마감일자 : 2017. 6. 26.
- 도로·철도·건축물 등의 하부가 토양오염물질로 오염되어 현행 정화 방법으로는 이행기간 내에 정화기준 이하로 정화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을 위해성평가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오염토양의 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 가. 오염부지의 특성상 적극적인 정화조치가 어려운 오염부지를 위해  
성평가 대상에 추가(안 제11조의3 신설)

1) 현행은 토양이 오염되면 정화책임자는 원칙적으로 이행기간 내에 정  
화기준 이하로 정화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국유재산으로  
인해 토양오염이 발생하여 국가가 토양정화를 하려는 경우, 정화책임자  
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오  
염토양을 정화하는 경우 등은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양  
정화의 범위, 시기 및 수준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하지만, 도로·철도·건축물 등의 하부가 토양오염물질로 오염되는  
등 오염부지의 특성상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행기간 내에 현재의 정화  
방법으로는 정화기준 이하로 정화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3) 이에 오염부지의 특성상 적극적 정화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해성  
평가 실시 대상에 추가하여, 오염부지의 특성 및 인체위해도를 고려하  
여 오염토양을 정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나.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  
원장에게 위임(안 제18조제2항)

1) 현행은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려는 자에게 오염토양을 반출·  
운반·정화 또는 사용할 때마다 토양 인수인계서를 오염토양 정보시스  
템에 입력하게 하고 있음.

2) 오염토양의 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전에 환경부장관  
이 수행하던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권한을 국  
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 **1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정(안) (국 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5. 17.                      ● 마감일자 : 2017. 6. 26.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법률 제14569호,  
2017.2.8. 제정, 2018.2.9.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사

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빈집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및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직권철거 등 국민의 권리의무를 침해할 여지가 있는 절차에 대  
한 권리보호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  
모재건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이 가능한 구역 및 대상을  
명확히 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유연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 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가로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나 토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되, 추가면적은 전체 사업시행  
면적의 100분의 20미만으로, 전체 사업시행면적은 1만 제곱미터 미만  
으로 제한하도록 함

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개발  
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정비지원기구의 업무를 주민에 대한 지  
원측면으로 특정하여 사업참여를 원하는 주민들이 손쉽게 사업에 착  
수할 수 있도록 지원

## 1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 (국토 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5. 17.                      • 마감일자 : 2017. 6. 26.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법률 제14569호,2017.2.8.  
제정, 2018.2.9.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빈집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및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인 절차와 직권철거 등 국민의 권리의무를 침해할 여지가 있는 절차  
에 대한 권리보호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  
모재건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이 가능한 구역 및 대상을  
명확히 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유연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 가. 빈집으로 관리할 주택을 주택법상 주택(오피스텔 포함)으로 하고, 공공임대주택, 별장 등 일시 사용주택, 건축중인 주택, 5년 미만의 기간동안 미분양인 주택은 빈집에서 제외 (시행령 제2조)
- 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6미터 이상 사도에 접하는 경우도 가로요건에 포함하고, 이를 위해 사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구역 외 부분을 일부 포함하는 것도 허용(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 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폭 12미터 이상 일반도로에만 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복합 건축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폭 6미터 이상 일반도로에도 허용(시행령 제40조)

## 1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5. 17.                      • 마감일자 : 2017. 6. 26.
- 물류단지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수요검증 평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실수요검증 평가기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가. 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위원별 전문분야 구분 평가(안 제16조의4제2항, 제16조의8제2항)  
전체 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10명 이상 30명 이하에서 20명 이상 40명 이하로 확대하고, 실수요검증 회의 개최시 구성 하도록 정하고 있는 위원 수를 현행 10명 이하에서 15명 이하로 확대하여 전문분야 성격이 상이한 사업계획의 타당성 부문 평가와 금융 및 재무 부문 사업수행 능력 평가의 평가위원을 해당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평가하도록 함
- 나. 실수요검증 평가기준 변경(별표 2의2)
  - 1) 물류단지 입지선정의 적정성 평가항목 배점을 확대(10점→20점)하고, 평가내용을 기존 도로와의 접근성, 환경 및 보존관련 용도지역 훼손여부 등으로 구체화·세분화하며, 평가방법도 정성평가에서 정량평가로 변경

- 2) 물류단지 내에 대규모 점포나 지원시설보다는 물류시설이 보다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물류 시설용지에 대한 평가 기준 조정
- 3) 평가항목 중 미분양 물류단지와의 단순 직선거리로 평가하던 것을 인접 물류단지의 규모, 분양 및 입주현황, 이격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하도록 변경
- 4) 총 사업비 대비 지정요청자의 자기자본 비율로만 평가하던 항목을 총 사업비 산정의 타당성도 함께 평가하도록 보완
- 5) 자본조달 계획 신뢰도 평가항목을 자기자본 조달계획 신뢰도와 타인 자본 조달계획 신뢰도로 구분한 후 자본조달 비율을 반영하여 평가하도록 보완
- 6) 지정요청자의 신용평가등급만으로 평가하던 재무상태 건전성 평가를 신용평가등급에 출자예정금액 조달능력을 반영하여 평가하도록 하여 소규모 우량업체에게 보다 유리하게 적용되는 문제점 개선
- 7) 기타 자기자본 인정에 필요한 제출서류 목록 등 자기자본 인정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 18.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안전처)

- 예고일자 : 2017. 5. 17.                      • 마감일자 : 2017. 6. 26.
- 법령에 따라 설립된 각종 특수법인(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의 위법행위에 대해 주무관청은 시정조치 또는 제재 등을 통해 이를 관리해야 하나 현행 법령에 시정조치 등 제재규정이 없어 위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어려움  
이에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운영이 법령, 정관 등을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시정명령, 임원의 직무정지, 해임명령처분과 같은 위법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법의 미비를 보완·개선하고자 함
- 가. 시정명령 권한 규정 신설(안 제15조의 2)
  - 1)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하거나 공제회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주무관청이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음

나.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권한 규정 신설(안 제15조의 3)

1) 주무관청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등 법령 또는 정관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법 제314조 및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행위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공제회의 정상적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임원에 대한 업무정지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음

다. 임원에 대한 해임명령 권한 규정 신설(안 제15조의 4)

1) 주무관청의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 정관에서 정하는 해임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해임되지 아니한 경우에 주무관청은 임원에 대한 해임 명령 조치를 통하여 공제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음

## 19.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안전처)

• 예고일자 : 2017. 5. 17.                      • 마감일자 : 2017. 6. 26.

○ 법령에 따라 설립된 각종 특수법인(대한소방공제회)의 위법행위에 대해 주무관청은 시정조치 또는 제재 등을 통해 이를 관리해야 하나 현행 법령에 시정조치 등 제재규정이 없어 위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어려움

이에 대한소방공제회 운영이 법령, 정관 등을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시정명령, 임원의 직무정지, 해임명령처분과 같은 위법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법의 미비를 보완·개선하고자 함

○ 가. 시정명령 권한 규정 신설(안 제22조의 2)

1) 대한소방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하거나 공제회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주무관청이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음

나.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권한 규정 신설(안 제22조의 3)

1) 주무관청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등 법령 또는 정관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법 제314조 및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행위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공제회의 정상적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임원에 대한 업무정지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음

다. 임원에 대한 해임명령 권한 규정 신설(안 제22조의 4)

1) 주무관청의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 정관에서 정하는 해임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해임되지 아니한 경우에 주무관청은 임원에 대한 해임 명령 조치를 통하여 공제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음

## 20.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7. 5. 17.                      • 마감일자 : 2017. 6. 26.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시 보건교사, 영양교사, 실기교사(해당교과에 한함)에 대한 구비 서류인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의한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사무의 간소화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NCS 기반 고교직업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예비 교원의 현장 적합성 제고를 위해 교원자격 검정관련 표시과목 변경 폐지 및 교직과목의 교육봉사활동 이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교원자격검정 사무처리 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의 고유식별 정보를 변경하고자 함

## 2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 예고일자 : 2017. 5. 17.                      • 마감일자 : 2017. 5. 22.

- 경찰병원의 진료 및 간호 능력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13명(정원 내 전문임기제 가급(전문의)4, 간호직 7급3·8급2, 간호조무직 7급1·8급1·9급2)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 22.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지치부)

- 예고일자 : 2017. 5. 18.      • 마감일자 : 2017. 6. 27.
- 행정사 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조직적·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사법인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행정사의 책임성 강화 및 자율규제 여건 마련을 위하여 행정사조직을 단일화하고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며, 행정사의 수입제한,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윤리의무를 강화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그간 행정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기술행정사의 명칭 변경(안 제4조)
  - 해운 해양안전 심판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사의 명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행정사’를 ‘해사행정사’로 명칭 변경
- 나. 시험면제 요건 강화(안 제9조)
  - 행정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험 일부면제 요건(직급·근무연수)을 강화함
- 다. 행정사의 의무 강화
  - 1) 행정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 성실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안 제21조제1항)
  - 2) 공무원으로 재직 후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된 업무는 수입할 수 없도록 함 (안 제21조의2)
  - 3) 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관계 등을 선전하거나 거짓된 내용 등 사실을 오도 오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함 (안 제22조제4호 및 제5호)
- 라. 행정사법인제도 도입(안 제25조의2 내지 제25조의10)
  - 복잡 다양화된 행정 수요에 대응하여 전문적·조직적 행정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사법인 제도를 도입함
- 마. 대한행정사회의 설립 및 가입 의무화
  - 1) 효율적인 협회 운영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행정사조직을 단일화(가칭 ‘대한행정사회’)하고, 지부를 둠 (안 제26조제1항 및 제4항)

2)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은 대한행정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안 제26조의2)

## 2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7. 5. 18.      • 마감일자 : 2017. 6. 27.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법률 제14774호, ‘17.4.18.공포, ‘17.10.19.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휴·폐업, 변경신고 포함)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의 처리 근거규정이 시행령에 신설(‘17.3.27)됨에 따라 시행규칙 주민번호 수집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가.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안 제11조)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서류 및 절차, 변경신고 사항 등을 신설
- 나. 사업의 개시 휴업 및 폐업 신고(안 제15조)  
사업의 개시 휴업 및 폐업 신고에 국제석유거래업을 추가
- 다. 행정처분 기준 정비(안 제16조)  
행정처분 기준에 국제석유거래업 관련 항목을 추가
- 라. 주민등록 근거규정 상향입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안 제49조)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의 처리 근거규정이 시행령에 신설(‘17.3. 27)됨에 따라 시행규칙 주민번호 수집근거 조항을 삭제
- 마.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관련 정비(안 별표2)  
행정법규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와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사이에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사업정지 일수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정비
- 바. 석유대체연료 수급거래 상황보고 접수기관 변경(안 별표8)  
석유대체연료사업자의 수급거래 상황 보고를 석유관리원이 받도록 하여 수급상황 보고 접수기관을 일원화

## 2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7. 5. 18.      • 마감일자 : 2017. 6. 27.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법률 제14774호, ‘17.4.18.공포, ‘17.10.19.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제석유거래업 신고 절차, 종합보세구역內석유제품 혼합 제조 방법을 정하고, 행정 효율성제고를 위해 석유수출입업 등록업무를 시·도에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가. 국제석유거래업자의 석유제품 혼합·제조방법 신설(안 제2조의2)  
종합보세구역내 혼합제조 방법으로, ①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 ②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을 혼합, ③ 석유제품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을 규정
- 나. 액화석유가스수출입업자 비축의무 근거규정 삭제(안 제19조)  
석유수출입업자 중 프로판 및 부탄을 수출입하는 자에 대한 비축의무 근거 규정 삭제
- 다. 전자상거래 이용시 수입부과금 환급기간 연장(안 제27조)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관련 수입부과금 환급 기한을 현행 2017년 6월 30일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6개월 연장
- 라.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45조)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출입업자의 등록·관리를 산업부에서 시·도로 위임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국제석유거래업 신고, 확인증 발급업무와 시·도의 일반·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업무 중 등록서류 접수·확인 등의 업무를 석유관리원에 위탁
- 마. 과태료 부과·징수 항목추가 및 제도 정비(안 제47조)  
국제석유거래업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항목을 추가하고, 가짜석유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제도를 정비
- 바. 수급거래상황보고 행정처분 기준 완화(안 별표8)  
경과실로 인한 수급거래상황 1회 미보고 시 현행 과태료 50만원 부과 대신 경고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담 완화

## 25.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5. 18.      • 마감일자 : 2017. 6. 27.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입소우선 순위에 국가유공자의 자녀를 포함시키며, 영유아의 건강진단 실시여부를 어린이집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4597호, 2017. 3. 14. 공포, 2017. 9. 15.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보호자 교육의 방법 및 교육 내용 규정(안 제4조의2 신설)
  - 나.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가 되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의 기준을 규정(안 제29조제2항 신설)
  - 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식 확대에 따른 어린이집 우선 이용지원 개선 사항 등 반영 (안 제29조제3항제6호 및 제7호 개정)
  - 라.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에 대한 적용 방법·기준 규정(안 제29조제4항 신설)
  - 마. 어린이집의 건강진단 실시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 항목·기준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3조 개정)
  - 바. 어린이집 내 보육 및 공공의 목적 외 설비 설치 금지(안 별표 1 개정)
  - 사. 보육교사 교육훈련시설의 영유아 건강지도 교과목 학점 정정(안 별표5 개정)
  - 아. 어린이집 시설이 없는 경우 폐쇄조치 규정(안 별표9 개정)
  - 자. 어린이집 입소거부 및 강제퇴소 금지 신설에 따른 인용규정 정비(안 별표9 개정)
  - 차. 인가 및 변경인가신청서의 첨부 서류에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제외 (안 별지 제4호 및 제6호 서식 개정)

## 26.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예고일자 : 2017. 5. 18.
- 마감일자 : 2017. 6. 27.

- 「관세법」 제54조에 따르면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대상 공급자에 대하여는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제외하고 있는 바, 중국산 에이치(H) 형강 공급자 중 가격약속대상 공급자의 추가 지정 요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 별표 1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되는 공급자」 중 제 6호의 공급자 명칭을 “진시스틸(Hebei Jinxi Iron and Steel Group Co., Ltd., Hebei Jinxi Section Steel Co., Ltd.) 및 오리엔탈티앤중(Tianjin Oriental Tianzhong Giant Heavy Profile Steel Sales Co., Ltd.)” 로 변경

## **27.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정(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5. 18.
- 마감일자 : 2017. 6. 27.

- 증축·용도변경 등 건축물의 표시변경이 발생 시 행정청이 전자촉탁으로 건축물등기부의 표시변경이 처리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 가. 건축물의 표시변경 시 등기촉탁 절차 개선(안 제26조)  
건축물의 표시변경 시 허가권자는 의무적으로 등기촉탁을 전자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건축물의 소유자가 표시변경 등기를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과태료가 발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

## **2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17. 5. 19.
- 마감일자 : 2017. 6. 28.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신고포상금 세부 지급액 조정과 개인별 연간지급상한액 규정,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서식 개정을 하고,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자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가 상당부분 중복됨에도 이중으로

서식을 작성해야하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 조회서식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 **2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17. 5. 19.                      • 마감일자 : 2017. 6. 28.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 성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당사자 및 목격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한 바, 신고포상금 지급요건 완화 등 일반인들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는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등을 부여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징수 대상기관 중 일부 기관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 신고포상금 지급요건 완화(안 제29조 제1항)  
2명 이상이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 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신설(안 제29조 제3항, 제4항)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위임(안 제33조 제3항, 제4항)

## **30.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7. 5. 19.                      • 마감일자 : 2017. 6. 8.
- 공익법무관 수당 등을 신설하는 등 공익법무관 보수 체계를 개편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 **31.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문화체육부)**

- 예고일자 : 2017. 5. 19.                      • 마감일자 : 2017. 6. 28.
-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여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4627호, '17. 9.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심의를거치도록 함.

나.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변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등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

다.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교재의 개발 지원, 교육·연수·연구 등에 대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라.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의 국제문화교류 활동 및 사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토록 함.

마. 전담기관 지정 요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지정 요건 및 신청방법,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와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의 조치사항 등을 정함.

## 3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5. 19.      • 마감일자 : 2017. 6. 28.

○ ‘조달청장의 불공정 조달행위 시정요구에 대한 이의제기’ 의 근거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마련 (2017년 1월 17일)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 이의제기 신청기한 및 결정기한 구체화(안 제18조의4조)  
 조달청장의 불공정 조달행위 시정요구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유를 갖추어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함  
 조달청장은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함 또한, 새로운 자료 제출로 시일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할 수 있도록 함

### 33.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5. 19.                      • 마감일자 : 2017. 6. 29.
- 항공기로 운송하는 위험물의 용기 및 포장에 관한 검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포장·용기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취소 또는 정지 사유로 포장·용기검사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포장 및 용기의 검사방법·합격기준(이하 “검사기준”이라 한다)등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한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4551호, 2017. 1. 17. 공포, 2017. 7. 18. 시행)됨에 따라 검사기준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한 경우 포장·용기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세부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교통관제연습제도 등 일부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하는 사람에 대해 감독하는 사람의 자격요건을 보완하고, 항공교통관제연습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안 제102조, 별지 제54호서식)
  - 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제외 대상에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을 추가하고, 비행승인신청서의 비행계획기간을 최대 6개월로 조정(안 제308조, 별지 제122호서식)
  - 다.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색각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추가의 색각실기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색각실기시험을 통과한 경우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발급(안 별표 9)
  - 라. 항공기로 운송하는 위험물 포장·용기검사기관이 검사기준을 위반하여 검사를 한 경우 포장·용기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세부 처분기준을 마련(안 별표 28)

- 마.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응시 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해 현행 9만6천원에서 12만3천원으로 인상하고, 듣기시험과 말하기시험으로 분리하여 수수료를 각각 1만9천원, 10만4천원으로 책정(안 별표 47)

### **34.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5. 19.                      • 마감일자 : 2017. 6. 19.
- 항공사고 예방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항공안전기술원의 활발한 연구·분석 활동을 통해 항공 안전을 확보하고, 항공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 협약 등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을 국내 환경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분석 등의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4551호, 2017. 1. 17. 공포, 2017. 7. 18. 시행) 됨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35.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7. 5. 19.                      • 마감일자 : 2017. 5. 29.
- 「고등교육법」 개정(' 17.3.21.)에 따라 고등교육통계조사의 안정적 및 체계적 운영을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령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 가. 고등교육통계조사의 대상·주기·내용·분류
  - 1) 고등교육법(제11조의3)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이하 ‘조사’)시행함에 있어 “고등교육기관”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4조의4제1항)
  - 2) 매년 4.1일자 및 10.1일자 기준으로 조사에서 포함해야하는 내용 명확화(안 제4조의4제2항)
  - 3) 조사대상, 내용 및 분류에 대한 표준화 관리로 정확하고 효율적인 조사 운영(안 제4조의4제3항)
- 나. 조사시스템 구축·관리 및 조사 작성·제출

1) 고등교육통계조사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조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의무화(안 제4조의4제4항)

2) 조사 지침 확정 및 통보, 조사 결과 제출 등 통계 작성과 제출 절차 구체화(안 제4조의4제5항)

다. 통계자료의 검증·보완 및 실지조사

1) 통계자료의 신뢰도 강화를 위한 조사대상 기관의 제출 자료 검증 및 수정·보완(안 제4조의4제6항)

2) 통계자료 작성의 확인을 위한 조사대상 기관의 통계작성 관련 자료 제출(안 제4조의4제7항)

라. 조사 결과의 활용

1) 조사 결과의 공표 방법 등(안 제4조의4제8항)

2) 조사 결과의 활용성 증대를 위한 주요 지표 개발 및 관리, 예측통계 산출 및 제공 등(안 제4조의4제9항)

3) 국제기구에 통계자료 제공 등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또는 외국기관 등)와의 교류 및 협력 사항(안 제4조의4제10항)

마. 교육통계조사 관련 위원회 설치(안 제4조의4제11항)

바. 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역할 구체화(안 제4조의4제12항)

사. 그 밖의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의4제13항)

### 3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7. 5. 19.      • 마감일자 : 2017. 5. 29.

○ 「초·중등교육법」 개정(' 17.3.21.)에 따라 초·중등교육통계조사의 안정적 및 체계적 운영을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령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 가. 초·중등교육통계조사의 대상·주기·내용·분류

1) 초·중등교육법(제11조의2)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이하 ‘조사’)시행함에 있어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등을 조사대상 기관으로 규정(안 제13조의2제1항)

2) 매년 4.1일자 및 10.1일자 기준으로 조사에서 포함해야하는 내용 명확화(안 제13조의2제2항)

3) 조사대상, 내용 및 분류에 대한 표준화 관리로 정확하고 효율적인 조사 운영(안 제13조의2제3항)

나. 조사시스템 구축·관리 및 조사 작성·제출

1) 초·중등교육통계조사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조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의무화(안 제13조의2제4항)

2) 조사 지침 확정 및 통보, 조사 결과 제출 등 통계 작성과 제출 절차 구체화(안 제13조의2제5항)

다. 통계자료의 검증·보완 및 실지조사

1) 통계자료의 신뢰도 강화를 위한 조사대상 기관(또는 교육감)의 제출 자료 검증 및 수정·보완(안 제13조의2제6항)

2) 통계자료 작성의 확인을 위한 조사대상 기관의 통계작성 관련 자료 제출(안 제13조의2제7항)

라. 조사 결과의 활용

1) 조사 결과의 공표 방법 등(안 제13조의2제8항)

2) 조사 결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교육청 자료 제공(안 제13조의2제9항)

3) 조사 결과의 활용성 증대를 위한 주요 지표 개발 및 관리, 예측통계 산출 및 제공 등(안 제13조의2제10항)

4) 국제기구에 통계자료 제공 등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또는 외국기관 등)와의 교류 및 협력 사항(안 제13조의2제11항)

마. 교육통계조사 관련 위원회 설치(안 제13조의2제12항)

바. 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역할 구체화(안 제13조의2제13항)

사. 그 밖의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의2제14항)

### **37.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7. 5. 19.                      • 마감일자 : 2017. 5. 29.

○ 「유아교육법」 개정(' 17.3.21.)에 따라 유아교육통계조사의 안정적 및 체계적 운영을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령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 가. 유아교육통계조사의 대상·주기·내용·분류

- 1) 유아교육법(제6조의2)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이하 ‘조사’)시행함에 있어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 등을 조사대상 기관으로 규정(안 제7조의2제1항)
- 2) 매년 4.1일자 및 10.1일자 기준으로 조사에서 포함해야하는 내용 명확화(안 제7조의2제2항)
- 3) 조사대상, 내용 및 분류에 대한 표준화 관리로 정확하고 효율적인 조사 운영(안 제7조의2제3항)

나. 조사시스템 구축·관리 및 통계 작성·제출

- 1) 유아교육통계조사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조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의무화(안 제7조의2제4항)
- 2) 조사 지침 확정 및 통보, 조사 결과 제출 등 통계 작성과 제출 절차 구체화(안 제7조의2제5항)

다. 통계자료의 검증·보완 및 실지조사

- 1) 통계자료의 신뢰도 강화를 위한 조사대상 기관(또는 교육감)의 제출 자료 검증 및 수정·보완(안 제7조의2제6항)
- 2) 통계자료 작성의 확인을 위한 조사대상 기관의 통계작성 관련 자료 제출(안 제7조의2제7항)

라. 조사 결과의 활용

- 1) 조사 결과의 공표 방법 등(안 제7조의2제8항)
- 2) 조사 결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교육청 자료 제공(안 제7조의2제9항)
- 3) 조사 결과의 활용성 증대를 위한 주요 지표 개발 및 관리, 예측통계 산출 및 제공 등(안 제7조의2제10항)
- 4) 국제기구에 통계자료 제공 등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또는 외국기관 등)와의 교류 및 협력 사항(안 제7조의2제11항)

마. 교육통계조사 관련 위원회 설치(안 제7조의2제12항)

바. 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역할 구체화(안 제7조의2제13항)

사. 그 밖의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7조의2제14항)

### 38.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5. 22.                      • 마감일자 : 2017. 7. 3.

○ 분쟁해결 수단으로 인과관계 존재 여부만을 판단하여 이를 기초로 신청인이 보다 효과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원인재정 제도를 도입하고, 조정(調定) 절차에서 당사자의 출석 등을 통해 실질적인 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업무 관련 비위(非違) 등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규정 마련 등(안 제10조 제2항)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도 이를 적용하고자 함

나. 조정(調停) 절차의 개선(안 제32조의2 등)

1) 조정은 당사자간의 의견조율이 중요하나 현행 조정절차에는 당사자간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절차가 미비함. 이에 위원회는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조율할 수 있도록 하여 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현행 조정절차에서는 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당사자가 수락했을 경우에만 조정 성립이 결정되도록 하고 있어 피신청인이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조정이 자연스럽게 불성립되는 구조임. 향후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의 이의 신청이 없으면 해당 조정 결정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신속한 사건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원인재정 제도의 도입(안 제36조의2 등)

1) 환경분쟁의 특성상 피해발생과 그 원인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당사자간의 합의 여지가 적어 환경분쟁 조정절차 중 인과관계 존재 여부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 범위 등까지 판단하는 재정(裁定) 신청이 대다수를 차지함

- 2) 재정은 분쟁해결에는 유용하지만 재정결정 이후 가해자측의 불복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피해자측의 소송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조정제도의 본질인 당사자의 합의유도라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 3) 기존의 재정을 책임재정으로 규정하고 이와 별개로 인과관계 존재 여부만을 판단하는 원인재정을 재정의 한 유형으로 도입하여, 위원회의 신속한 인과관계 존재 여부 판단을 기초로 환경분쟁 인과관계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당사자간 합의 등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3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5. 22.                      • 마감일자 : 2017. 7. 3.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정(법률 제 14781호, 2017.4.18. 공포, 2017.10.19 시행)에 따라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에 대한 승인취소 및 반입정지에 대한 세부 행정 처분 기준을 정하고 농지개량 성토용 순환토사의 중간처리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의무사용 이행여부 확인 절차 개선 (안 제27조제5항 및 제30조제3항 신설)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대한 재활용 실적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통보
  -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재활용실적 보고서를 활용하여 의무사용 이행여부 등 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
- 나. 농지개량 성토용 순환토사의 중간처리기준 강화(안 별표 1의2 제3호)
  - 농지개량 성토용에 한하여 농작물 생육저하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유기이물질 함유량 0.5퍼센트 이하로 강화
- 다. 임시보관장소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 3 제2호나목)
  - 2년에 3회 이상 반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승인취소
  - 임시보관장소에서 허용된 행위 외의 행위를 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반입정지 1월, 3월, 6월을 순차적으로 적용

#### 40.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5. 22                      • 마감일자 : 2017. 7. 3
- 순환토사를 「농지법」에 따른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용도를 확대하고, 의무사용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에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을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과태료 부과처분 차수의 산정방법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순환토사 재활용 용도에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 추가(안 제4조제1항제1호바목 삭제 및 제3호 다목 신설)
  - 순환골재의 재활용 용도에서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도를 삭제
  - 순환토사를 양·배수시설 등 시설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용도를 추가
- 나. 의무사용 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범위 확대(안 제17조제4호 신설)
  - 의무사용 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에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을 추가
- 다.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예외적용 대상 확대(안 제9조제1항제1호나목)
  - 건설폐기물에 대한 분리배출 예외 적용 대상에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같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

#### 4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7. 5. 22.                      • 마감일자 : 2017. 7. 3.
- 지방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여 국가정원이 공공정원의 Role Model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정원조성예정지 지정·해제, 조성계획 승인 및 사업인허가 절차

이행 근거 확보 등 지방정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민간·공동체정원의 등록요건 마련, 등록된 정원의 개원 및 휴원, 시정요구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관리의 품질을 확보하려는 것임

○ 가.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 요건 정비(안 제18조의2)

-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 요건에 지방정원의 운영실적, 재정자립도를 추가로 반영함

나. 지방정원조성예정지 지정·해제 등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18조의3)

- 지방정원조성예정지의 지정·해제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승인받도록 하고, 지정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사유발생 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조성예정지 내에서 행위를 금지하는 사항을 규정함

다. 지방정원조성계획의 승인 등의 근거 마련 (안 제18조의3)

- 지방정원조성과 관련하여 조성계획(변경)의 승인·변경승인·승인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도입함

라. 다른 법률에 따른 개별허가사항 의제처리 근거 마련(안 제18조의3)

- 지방정원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 다른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 사항을 의제처리 하도록 함

마. 토지 등의 수용 근거 마련(안 제18조의3)

- 지방정원조성에 필요한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게 함

바. 정원의 등록 기준 마련(안 제18조의3)

- 지방·민간·공동체정원은 조성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관리인과 등록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게 함

사. 정원의 개원 및 휴원, 시정요구 근거 마련(안 제18조의3)

- 등록된 지방·민간·공동체정원의 개원 및 휴원에 관한 사항과, 정원의 시설 및 운영·관리에 있어 시·도지사의 시정요구에 관한 사항을 도입함

아. 청문 절차(안 제21조) 및 벌칙 규정 추가(안 제23조의3)

- 지방정원조성계획의 승인취소, 지방정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 산림 원상회복 명령, 등록된 정원의 등록취소에 대하여 청문절차를

도입하고,

- 지방정원조성예정지에서 행위제한에 대한 불법행위에 처벌 규정을 도입함

## 42.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5. 22.      • 마감일자 : 2017. 7. 3.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중 정부 위원의 구성을 일부 개정하고, 법 개정에 따른 기후보건영향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및 국가보훈처장을 삭제(안 제4조)
- 나. 개정 보건의료기본법(법률 제14558호, 시행 2017.8.9.)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기후보건영향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16조 및 제17조)

## 43.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7. 5. 23.      • 마감일자 : 2017. 7. 3.
-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도록 「국어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 절차,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해 「국어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국어심의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선정의 공정성 및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 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국어심의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명시하여 규정(안 제5조의 제2항)
- 나. 중앙행정기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위원장, 당연직 및 위촉위원의 구성과 임명 방법을 규정(안 제12조의 제2항)

- 다.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심의사항 규정 (안 제12조의 제3항, 제4항)
- 라. 전문용어 표준화의 체계와 절차 (안 제12조의 2 제1항)
-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회 운영 실적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2조의 2 제4항)
- 바. 전문용어 표준화 심의 의뢰서 및 심의 요청 목록 서식 규정(별지 제3호, 제4호)

#### **4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인)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7. 5. 23.                      • 마감일자 : 2017. 7. 3.
- 대부업자에 대한 실태조사의 신뢰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와 방법을 명확화하고, 대부업자등의 대부광고시 대부계약과 관련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리도록 하는 한편, 법률상의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사유별 과태료 기준금액도 상향 조정하는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17.10.19일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대부업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구체화(안 제9조의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행하는 대부업 실태조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사의 기준 시점을 매년 6월 30일과 12월 30일로 명확화하고, 제출 시기 등을 구체화하는 등 관련 절차와 방법을 명확화함.
- 나. 퇴직자 제재권한의 금융감독원장 위탁(안 제11조의3)  
금융위원회가 행사하는 퇴직자에 대한 제재권한 중 퇴임한 임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 상당, 퇴직한 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면직 요구 상당의 조치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여 퇴직자 제재 중 일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다. 대부광고시 대부업 이용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경고문구 표시(안 별표 1 제2호)  
대부업자등이 대부광고시 기재하여야 하는 경고문구에 대부이용자가

대부업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추가로 포함하도록 하여 대부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함.

라. 과태료 기준금액 상향(안 별표 3)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과태료의 부과한도가 상향된 점을 감안하여, 시행령에서 구체화하고 있는 각 위반사유별 과태료 기준금액도 상향 정비하는 한편,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45.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7. 5. 23.                      • 마감일자 : 2017. 7. 3.
-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등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17.10.19일 시행)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 각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 면제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면제근거 마련 (안 제33조 및 별표 3)  
과태료 부과한도 내에서 구체적인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4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7. 5. 23.                      • 마감일자 : 2017. 7. 3.
-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의 범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인상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 17.10.19일 시행)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는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금융위원회의 퇴직자 제재권한 중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려는 것임
- 가. 퇴직자 제재권한의 금융감독원장 위탁(안 제30조)

금융위원회가 행사하는 금융회사의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 중 퇴임한 임원에 대한 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상당, 퇴직한 직원에 대한 6개월 이내의 정직·감봉·견책·감봉·주의상당의 조치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여 퇴직자 제재 중 일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나. 과태료 기준금액 인상 및 면제근거 마련(안 별표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한도가 약 2배 인상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에 이를 반영하는 한편,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4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7. 5. 23                      • 마감일자 : 2017. 7. 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17.10.19일 시행)\*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확대되고 부과한도가 인상됨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기준금액을 신설하거나 상향 조정하는 등 제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 (' 15.9월)에 따라 과태료·과징금 부과한도 인상, 동일 위반행위에 동일 유형의 금전제재 부과 등의 내용으로 11개 금융법 일괄 개정
- (1) 과태료 기준금액 신설·인상 (안 별표22)
  - 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항목 신설 및 과태료 부과한도가 인상(5천만원→1억원, 1천만원→ 3천만원)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신설 내지 인상
  -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현재 금융법상 과태료 면제는 법령이 아닌 검사·제재규정(금융위 고시)에만 규정하고 있음\*\* 공정거래법 및 예금자보호법도 각각 시행령에 과태료 면제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 (2) 퇴직자 제재권한 금감원 위탁 (안 별표20)

- 현직자에 대한 제재와 마찬가지로 퇴직자에 대해서도 금융위의 제재권한(조치내용 결정 및 통보) 중 일부를 금감원장에 위탁하도록 근거 마련 구분 금융위 금감원장 퇴임 임원 해임요구 · 직무정지 · 문책경고 상당 주의 · 주의적 경고 상당 퇴직 직원 면직 상당 주의 · 경고 · 견책 · 감봉 · 정직 상당

#### 48.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7. 5. 23.                      • 마감일자 : 2017. 7. 3
- 보험업법 개정(' 17.10.19일 시행)으로 과태료 부과한도가 인상되고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등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각 위반 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신설되는 과태료의 기준금액을 설정하는 등 제재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가. 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한도가 인상(5천만원→1억원, 1천만원→3천만원)되고 과태료 부과대상이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조정 개별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법률상 부과한도액의 일정비율로 차등화하고 있는 현행 기준금액 체계를 기본으로 하되, 금융업법간 제재의 형평 차원에서 기준금액을 일부 조정하고 법인·개인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제재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49.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7. 5. 23.                      • 마감일자 : 2017. 7. 3.
- 은행법 개정(법률 제14826호, ' 17.10.19일 시행)에 따라 일부 과태료 부과항목이 신설되고 과태료 부과한도가 인상된 바, 은행법 시행령 이 정하는 각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을 신설 또는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과태료 부과 면제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50.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7. 5. 23.                      • 마감일자 : 2017. 7. 3.

○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등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17.10.19일 시행)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이 정하는 각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 산정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현행 기본부과율의 적용근거를 삭제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 면제근거 마련, 금융위원회의 퇴직자 제재권한 중 일부의 금융감독원장 위탁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 과징금 기본부과율 적용근거 삭제(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법정부과한도액을 다섯 단계로 구분하여 단순히 각 단계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과징금 부과 비율(기본부과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선하여, 법령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산정하기 위해 현행 기본부과율의 적용근거가 되는 5개 구간의 구분 규정을 삭제함.

나. 퇴직자 제재권한의 금융감독원장 위탁(안 별표7)  
 금융위원회가 행사하는 금융지주회사법상 퇴직자에 대한 제재권한 중 퇴임한 임원에 대한 주의·경고 상당, 퇴직한 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 상당의 조치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여 퇴직자 제재 중 일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다. 과태료 기준금액 인상 및 면제근거 마련(안 별표8)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한도가 약 2배 인상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과태료 기준금액에 이를 반영하는 한편,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5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5. 23.                      • 마감일자 : 2017. 7. 4.

○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제도 및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 관리법 이 일부개정(법률 제14793호, 2017.4.18.공포, 2017.10.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행위허가 기준 간소화 등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하자보수청구권자에 임차인, 임차인대표회의 추가(안 제36조제2항 외 다수)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임차인에게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함에 따라, 하자보수청구권자에 임차인, 임차인대표회의를 추가

- 나. 하자보수계획 보수기간 구체화(안 제38조제3항제1호)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하자보수계획 통보 시 동일한 시설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여러 세대를 보수하는 등 장기간 소요 시 세대별 보수일정을 명시토록 함

- 다. 하자보수 불이행 시 시정명령을 위한 정당한 사유 규정(안 제40조의2 신설)

입주자대표회의등이 하자보수 청구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할 때 지자체장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자체장의 시정명령에 필요한 정당한 사유를 규정

- 라. 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기간 명확화(안 제42조제2항)

건설임대주택이 분양 전환되는 경우 사업주체가 예치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담보책임기간(10년)의 잔여기간에 대하여 예치하는 것으로 명확화

- 마. 이의 신청서 작성 관계 전문가 범위를 정함(안 제57조의2 신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판정에 이의 신청 시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에 변호사를 추가

- 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업무관할 추가(안 제82조의2 신설)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업무관할을 추가하여 규정함

- 사.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설치 및 구성(안 제96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의 장, 담당 공무원과 센터구성을 위해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파견 등을 규정

- 아.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에 대한 확인(안 제96조의3 신설)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 시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는 신고내용이 적정한 지를 확인하고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도록 함  
자. 공동주택 관리비리 종결처리(안 제96조의4 신설)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 시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는 신고내용이 부적합한 경우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함

차.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의 처리(안 제96조의5 신설)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 시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는 지자체장에게 신고내용 조사 요구 시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고, 지자체장의 조사결과가 충분하지 아나한 경우 재조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카.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를 위한 행위허가 절차 간소화(안 별표3. 6. 나)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 설치 시 입주자 2/3의 동의와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와 지자체장에 신고토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충전기 설치가 원활하도록 함

## 52. 비상대비지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 예고일자 : 2017. 5. 23.                      • 마감일자 : 2017. 7. 3.
- 인력자원 현황조사의 효율성을 위해 자격 면허를 발급하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자격 면허의 검정·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도 그 발급사실을 읍 면 동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전시·사변 등에 대비한 중점관리대상 인력·물자 등에 대한 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인력·물자·업체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750호, 2017.3.21공포, 2017. 9. 22시행)됨에 따라 자격 면허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의 종류와 인력·물자·업체에 대한 확인 점검 절차 등 개정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자격이나 면허의 검정·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를 명시함(안 제9조 제2항)

- 나. 중점관리대상 인력·물자·업체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점검하는 절차 등을 명시함(안 제10조의2)

### 53.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양수신부)

- 예고일자 : 2017. 5. 24.                      • 마감일자 : 2017. 7. 4.
- 선박관리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시행령 위임사항을 삭제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 가. 위원회 심의 안전관련 조항 삭제(안 제2조)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4조제3항 삭제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위원회 심의 안전 조항 삭제
  - 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항 삭제(안 제4조)  
위원회 소집 절차와 의결 방법 등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조항 삭제
  - 다. 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 삭제(안 제3조, 안 제5조)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5조 삭제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위원회 구성 및 전문위원관련 규정 조항 삭제

### 54.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 예고일자 : 2017. 5. 24.                      • 마감일자 : 2017. 7. 3.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령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만 일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자격취득 시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기술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합동기술사사무소 보조 인력자격 등 19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21개 자격요건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함으로써,

취업과 관련한 학력·학벌차별 관행을 철폐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만드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 55.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및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

- 예고일자 : 2017. 5. 24.                      • 마감일자 : 2017. 7. 3.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근무 할 수 있는 건강가정사의 자격 취득 시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 취득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만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거나 조종면허 시험과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해당 자격을 취득하거나 조종면허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취업과 관련한 학력·학벌차별 관행을 철폐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만드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 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건강가정사의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조)
- 나.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종면허 시험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조)

## 5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부)

- 예고일자 : 2017. 5. 24.                      • 마감일자 : 2017. 7. 3.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개정(‘17.3.2.)에 따른 하위

법령 개정으로 중도매업의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가 계속하여 중도매업을 하고자 할 경우 갱신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중도매업 갱신허가 규정 신설(안 제19조제2항, 3항)

중도매업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30일전에 동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갱신허가를 받도록 하되, 첨부서류가 최초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경우와 동일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갱신규정 마련

**5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7. 5. 24.                      • 마감일자 : 2017. 7. 3.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개정( '17.3.2.)에 따라 농산물 경쟁력 제고와 수급조절을 위한 주산지협의회 및 품목별 중앙주산지협회의 구성·운영에 대해 규정을 신설하고, 경매사 시험 제도개편에 따라 시험과목·시험주기 등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임

○ 가. 주산지협의회 업무수행범위 및 구성위원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주산지협회의 설치, 위원, 위원장 등에 대해 규정 마련

나. 중앙주산지협회의 업무수행범위 규정 신설(안 제4조의3)

품목별 중앙주산지협회의 위원, 위원장, 사무국에 대해 규정 신설

다. 경매사 시험과목, 주기 등 제도개편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안 17조의3)

1차시험 시험과목 축소에 따른 시험과목변경, 청과·수산부류의 시험주기 개편, 제도개편에 따른 필요한 규정 개정

**58.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5. 24.                      • 마감일자 : 2017. 6. 8.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추가하기 위함임

○ 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규격 및 모양 규정

- 나.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업무대행기관에 대한 수수료 범위 신설
- 다.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에 대한 전자적 소인 생략

## 59.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17. 5. 25.                      • 마감일자 : 2017. 7. 4.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법률 제12698호, 2017. 3. 21. 공포, 2017. 9. 22. 시행) 개정에 따라 중앙경력단절지원센터의 업무수행 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제6조)
- 가. 법률 제13조의2제1항 관련 중앙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 나. 법 제13조의2제2항제7호에서 위임한 중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신설)

## 60.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17. 5. 25.                      • 마감일자 : 2017. 7. 4.
- “경력단절등”의 정의에 경력단절 사유로 ‘혼인’을 포함하고, 경력단절예방 및 경제활동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단위의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 근거와 중앙경력단절지원센터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법률 제12698호, 2017. 3. 21. 공포, 2017. 9.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재 시행령 운영상 일부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가. 법률로 상향 규정한 제4조(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기능) 삭제
  - 나. 중앙지원센터의 지정 기준을 별도로 신설하기 위해 제5조제1항의 지원센터 지정 기준인 “별표”를 “별표 1”로 개정하고, 제4항의 “지원센터 지정서” 양식은 중앙지원센터와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서” 로 개정(안 제5조제1항, 제5항)

다.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의2제1항 ~ 제5항)

라. 법 제13조3제3항 관련 지원센터 및 중앙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의3제1항 ~ 제2항)

마. 중앙지원센터 운영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개정)

## 61. 이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 예고일자 : 2017. 5. 25.

• 마감일자 : 2017. 7. 4.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814호, 2017.4.18. 공포, 2017.10.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하도급대금에 대한 대물변제가 인정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술유용·부당 단가 인하·부당 위탁취소 및 부당 반품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자의 범위에서 그 동안 제외되었던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임직원을 포함시킴으로써 하도급분야의 신고포상금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기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 하도급대금의 대물변제 인정사유 마련(안 제9조의4)

개정 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금의 대물변제가 인정되는 그 밖의 사유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시행령에서는 다음의 사유를 대물변제의 사유로 정함.

1) 발주자가 대물변제 조건으로 공사 등을 발주하고 공사 등을 이행한 원사업자에게 대물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해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발주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어 불가피하게 원사업자에게 대물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확대(안 제10의2)

하도급법의 경우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하도급 불공정행위의 적발력 제

고를 위해 해당 범위반행위를 한 원사업자 및 범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만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원사업자의 임직원 및 수급사업자의 임직원을 지급대상에 포함.

## 6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행정자치부)

- 예고일자 : 2017. 5. 26.      • 마감일자 : 2017. 7. 5.
- 공중화장실법을 적용받는 민간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보다 많은 민간 건물에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이 설치되도록 하여 화장실 범죄 예방 및 이용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도서관 등 영유아를 동반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를 의무화하여 돌봄친화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가. 화장실법을 적용하는 민간건물의 면적기준 조정 등(영 제3조제1호 · 제2호 · 제3호)
  - 1) 남녀공용화장실 이용에 대한 이용자의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화장실법이 적용되는 민간건물의 바닥면적 기준을 하향조정(1000㎡ 축소)하고 일정규모(2000㎡) 이상의 근린생활시설을 화장실법 적용범위에 포함하여 남녀분리가 의무인 공중화장실 보급을 확대하고자 함.
- 나.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 대상 확대(안 별표 제18호)
  - 1) 현재 도로 및 교통시설에만 적용되는 기저귀 교환대 설치 의무를 영유아를 동반한 국민의 이용이 많은 문화 및 집회시설, 종합병원, 도서관, 공공업무시설, 관광 휴게시설로 확대하고자 함.
  - 2) 인용근거 법률(항공법)개정에 따른 법률명칭변경 및 조문변경

## 63. 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인) (법무부)

- 예고일자 : 2017. 5. 26.      • 마감일자 : 2017. 7. 5.
- 전자적 처리절차에서 제출된 전자화대상문서는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14호)에 따라 약식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검사의 처분이 있을때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이후 폐기 절차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 바,

전자화문서 작성 및 보관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전자적 처리사건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화대상 문서의 폐기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64.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7. 5. 26.                      • 마감일자 : 2017. 7. 5.
- 법관의 금품 관련 범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법관에 대하여 징계 외에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65.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7. 5. 26.                      • 마감일자 : 2017. 7. 5.
- 검사징계법 제7조의2에서는 징계부가금의 조정, 감면, 징수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나, 2015. 12. 24. 위 법 개정으로 조문 체계가 변경되었으므로 검사징계법 상 관련 규정을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의 조문 체계에 맞추어 수정하려는 것임

#### **66.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7. 5. 26.                      • 마감일자 : 2017. 7. 5.
-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제정 운영하고 있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교육부령)에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운영상 필요한 관련 절차를 보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6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7. 5. 26.                      • 마감일자 : 2017. 6. 15.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이 개정(법률 제14495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종사 근로자도 고액의 재산·소득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관련 시행규칙 규정·서식을 정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4제3항이 개정되어 고용보험 실업급여사업의 적용제외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